

제 6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6.1 조 원산지 상품¹⁾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 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 6.2 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6-가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 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가 그 상품의 반입허용 여부까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조정가치}(AV)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 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2. 각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이 상품을 생산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합치되게 기록되고 유지되도록 규정한다.

3. 부속서 6-가에서 자동차 상품²⁾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에 규정된 대로 또는 다음의 방법에 기초하여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제3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다음 호와 소호로 분류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제8407.31호 내지 제8407.34호(엔진), 제8408.20호(자동차를 위한 디젤엔진), 제8409호(엔진 부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자동차), 제8706호(샤시), 제8707호(차체) 및 제8708호(자동차 부품)

(자동차 제품을 위한) 순원가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순원가}(NC)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순원가}(NC)}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순원가(NC)는 상품의 순원가이다. 그리고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제3항의 역내가치포함비율 방식의 목적상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범주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그 범주내의 모든 자동차를 기초로 또는 그 범주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만을 기초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을 낸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차량류에서 동일 모델라인의 자동차

나.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자동차류, 또는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라인의 자동차

5. 각 당사국은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재료³⁾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는 목적상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다음에 걸쳐 평균을 낸 계산법

1) 상품이 판매되는 자동차 생산자의 회계연도

2) 어느 분기 또는 월, 또는

3) 자동차 재료 생산자의 회계연도

다만, 그 상품은 계산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연도·분기 또는 월 동안 생산되었어야 한다.

3) 제5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다음 호와 소호로 분류된 자동차 재료에만 적용된다. 제8407.31호 내지 제8407.34호(엔진), 제8408.20호(자동차를 위한 디젤엔진), 제8409호(엔진 부품), 제8706호(샤시), 제8707호(차체) 및 제8708호(자동차 부품)

- 나. 가호의 평균이 하나 이상의 자동차 생산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산정되는 계산법, 또는
- 다. 가호 또는 나호의 평균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산정되는 계산법

제 6.3 조 재료의 가치

각 당사국은 제6.2조 및 제6.6조의 목적상 재료의 가치가 다음이 되도록 규정한다.

-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의 조정가치
-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된 재료의 경우, 관세 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및 제15조와 그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 즉 생산자에 의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요구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정을 가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가치, 또는
-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 1)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 2)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

제 6.4 조 재료의 가치에 대한 추가조정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경비가 제6.3조에 따라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경비가 재료의 가치에 추가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그리고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2. 각 당사국은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경비가 제6.3조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 그 경비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

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⁴⁾

제 6.5 조

누 적

1.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6.4조제1항가호 및 제2항가호의 목적상, "화물운송비"는, 운송 방식에 관계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내륙화물운송비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화물 운송비를 포함한다.

제 6.6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제7항이 제1항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제 6.7 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⁵⁾

1.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5) 제6.7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대체가능 상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국가들을 비율로 적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8 조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

1. 각 당사국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 ·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는지 여부의 결정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 그 부속품 ·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나. 그 부속품 ·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부속품 ·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6.9 조
상품의 세트

1. 각 당사국은 상품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의 규칙 3을 적용한 결과로 세트로 분류되는 경우,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가 원산지 상품이 되도록 규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 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는 원산지 상품이다.

3.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제8항이 제1항 및 제2항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제 6.10 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6.11 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각 당사국은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제 6.12 조

간접재료

각 당사국은 제6.1조가호, 나호1목 및 다호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간접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제 6.13 조

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 6.14 조 협 의 및 수 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이 장의 운영에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제22.2조(공동위원회)제3항다호에 따라 이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한 가능한 개정 또는 수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한다.
3.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제3항 내지 제5항이 제2항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6.15 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2. 각 당사국은 증거가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거가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거인의 성명

나.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라.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증명일, 그리고

아. 제4항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거가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거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 증거를 다른 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각 당사국은 증거가 다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나. 서면 또는 전자 증거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

5. 각 당사국은 증거가 발급된 날 후 4년 동안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 또는 수출 당사국의 언어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수입 당사국의 언어로 된 증명의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6.16 조

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증명 또는 정보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 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입증하는 증명 또는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상품인 경우

제 6.17 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6.18 조

검 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다. 제6.17조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마.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다호에 규정된 방문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나. 제1항다호에 따라 방문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6.17조에 언급된 기록이나 그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다.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 수입 당사국이 검증을 통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신고나 증명을 제공하는 행위유형에 관여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그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후의 진술·신고 또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동일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제 6.19 조 수입 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효라고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수락한다.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입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가.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을 함에 있어 과실·중과실 또는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 또는
- 나.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이 유효하지 아니함을 인지하는 때에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그 신청을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 나.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적시할 것
- 다. 제6.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가호에서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할 것
- 라.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증명의 사본을 수입 당사국에 제공할 것
- 마. 수입자가 가호의 신고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수입서류를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할 것

- 바. 수출자의 증거가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가 증거를 작성하는 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
- 사. 생산자의 증거가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을 마련할 것
 - 1) 생산자가 자신의 증거를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생산자와의 주선, 또는
 - 2) 그 생산자가 자신의 증거를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수출자와의 주선, 그리고
- 아. 수입자의 증거 또는 인지가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제6.1조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상품이 수입의 시점에서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신고나 진술
- 나. 증거가 그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 증거의 사본이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정보, 그리고
- 다. 수입 당사국이 요청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 6.20 조 수출 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제6.15조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제출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 사본을 제공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허위 증명에는, 수입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 또는 표시를 한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에 동등한 벌칙을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다.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출하였고 그 증명이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이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증명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에 대하여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공한 모든 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공받은 모든 인에게 증명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통보할 경우, 그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부정확한 증명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없다.

제 6.21 조

공동 지침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6월 이내에 이 장과 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의 해석·적용 및 운영에 관한 공동 지침을 개발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제 6.22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조정가치라 함은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그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로서, 필요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부과금 또는 경비를 제외하기 위하여 조정된 가치를 말한다.

자동차류라 함은 자동차의 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8701.20호로 분류된 자동차, 제8702.10호 또는 제8702.90호로 분류된 16인승 이상의 수송차량, 그리고 제8704.10호, 제8704.22호, 제8704.23호, 제8704.32호, 제8704.90호 또는 제8705호 또는 제8706호로 분류된 자동차
- 나. 제8701.10호 또는 제8701.30호 내지 제8701.90호로 분류된 자동차
- 다. 제8702.10호 또는 제8702.90호로 분류된 15인승 이하 수송차량, 그리고 제8704.21호 또는 제8704.31호로 분류된 자동차, 또는
- 라. 제8703.21호 내지 제8703.90호로 분류된 자동차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라 함은 수입·경비·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 나.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다.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라.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덫사냥·어로

또는 양식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으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
- 바.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 사. 바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그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아.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나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또는
 - 2)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고상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재제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 그리고
-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 내지 차호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동일상품이라 함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는 특정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간접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이나, 상품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연료 및 에너지
- 나. 도구·형판 및 주형

-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 그리스 ·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 · 안경 · 신발 · 의류 · 안전장비 및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 장치 및 보급품
- 사. 촉매제와 용해제, 그리고
- 아. 상품에 결합되지 않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재료라 함은 부품이나 원료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자가생산된 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모델라인이라 함은 같은 차대나 모델명을 가진 일군의 자동차를 말한다.

순원가라 함은 총비용에서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 마케팅 · 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상품의 순원가라 함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순원가를 말한다.

- 가.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그러한 모든 상품의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 마케팅 · 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상품들의 순원가를 그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한 것
- 나.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그 상품에 총비용을 할당한 후, 그 상품에 할당된 총비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 마케팅 ·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것, 또는
- 다. 그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이러한 비용들의 총 합이 판촉·마케팅·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다만, 모든 그러한 비용의 할당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규정된 합리적인 비용할당과 관련된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비허용 이자비용이라 함은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 베이스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라 함은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용으로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생산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라 함은 상품을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덫사냥·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 할당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결과로 나온 개별적인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가. 중고 상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고,

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척·검사·테스팅 또는 그 밖의 다른 공정

총비용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발생한 상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 기간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품비용은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며, 재료의 가치,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경비를 포함한다. 기간비용은 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경비와 일반 및 관리 경비처럼 발생한 기간 중에 소요된 비용이다. 그 밖의 비용은 이자와 같이 생산자의 회계 장부에 기록된 비용으로서 제품비용이나 기간비용이 아닌 모든 비용이다. 총비용은 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자에 의하여 취득된 이윤이나, 자산 취득세를 포함하여 그 이윤에 대해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된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에 활용되거나 소비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라 함은 관세 산정의 목적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